

공 보

제659호 2018. 8. 22.(수)

선 결	기관의 장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0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10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8-101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6
 거창군 고시 제2018-10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7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100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거창군 공고 제2018-1010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7
 거창군 공고 제2018-101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
 거창군 공고 제2018-1012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5
 거창군 공고 제2018-1023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69호선)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71
 거창군 공고 제2018-1026호 2018년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공고 74
 거창군 공고 제2018-1032호 「거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86

이 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10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76-256호(1976.02.07.)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2-10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8. 8. 17.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시점	종점		
도시계획시설	신세계 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2-10호선)	거창	중앙가지	중로	2	10	172.4	15.0	3,397	거창읍 중양리 473-1	거창읍 가지리 1689-10	건설부 고시 제1976-194호 (1976.02.07.)	
도시계획시설	방주아트빌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2-10호선)	거창	중앙가지	중로	2	10	387.6	15.0	5,269	거창읍 중양리 458-2	거창읍 중양리 473-2	건설부 고시 제1976-194호 (1976.02.07.)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9.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중로 2 - 10호선(신세계주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성 명	주 소	
계		15필지		38,765	3,397			
1	거창읍 중앙리	473-3	전	889	464	거창 고등학교	경남 거창군 거창읍	
2	"	479-3	창	462	246	거창군		
3	"	479-4	답	132	84	거창군		
4	"	482-9	도	637	53	국토교통부		
5	"	478-5	답	1,345	689	정*규	경남 거창군 거창읍	
6	"	477-7	답	717	90	이*민	경남 거창군 거창읍	
7	"	478-7	답	694	147	거창군		
8	거창읍 가지리	1696	도	512	31	국토교통부		
9	"	1700	친	18,913	632	국토교통부		
10	"	1697-2	도	463	63	국토교통부		
11	"	182-2	답	661	133	경상남도		
12	"	182-3	답	896	396	경상남도		
13	"	181	답	1,659	340	거창군		
14	"	181-1	구	116	27	거창군		
15	"	1689-10	구	10,669	2	농림축산 식품부		

○ 중로 2 - 10호선(방주아트빌주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성 명	주 소	
계				36,115	5,269			
1	거창읍 중양리	458-3	전	513	401	거창군		
2	“	460-4	전	1,714	643	거창군		
3	“	460-5	전	661	224	거창군		
4	“	461-10	전	1,613	66	거창군		
5	“	460-6	전	599	394	거창군		
6	거창읍 가지리	243-2	답	1,135	582	거창군		
7	“	242-1	전	1,560	52	거창군		
8	“	240-2	답	1,102	764	거창군		
9	“	239	천	2,274	352	거창군		
10	“	238	천	886	426	거창군		
11	거창읍 중양리	472-6	전	1,018	67	거창 고등학교	경남 거창군 거창읍	
12	거창읍 가지리	1699	도	648	5	국토교통부		
13	거창읍 중양리	472-5	대	597	33	거창군		
14	거창읍 가지리	237	천	2,056	295	거창군		
15	“	1700	천	18,913	691	국토교통부		
16	거창읍 중양리	473-5	전	826	274	거창 고등학교	경남 거창군 거창읍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농지조성 【특용작물(인삼) 재배】
2. 사업내역

구분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83-10	56,419	8,830	13,860천원	2017. 5. 27. ~ 2018. 8. 31.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561	김영환
변경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83-15	24,485	8,432				

※ 변경사유 : 등록전환측량 성과 등 지적 공부정리 결과 반영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8년 8월 20일
거창군수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정비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 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18. 08. 23.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1-1번지 일 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정비사업

3. 사업면적 및 규모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가조면 수월리 산11-1번지	5,000.0	4,634.0	1,446.61	1,446.61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 (2008.9.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명 : 거창군수(산림과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8.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026	4,634					
1	가조면 수월리	산15-5	도	1,423	1,259		거창군			
2	가조면 수월리	산19-1	도	889	830		거창군			
3	가조면 수월리	산19-2	임	829	171		거창군			
4	가조면 수월리	산19-4	임	747	747		거창군			
5	가조면 수월리	산199-1	차	706	685		거창군			
6	가조면 수월리	산11-1	도	2,106	837		거창군			
7	가조면 수월리	산11-2	임	326	105	가조면 사병리 334	김종훈 거창군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 준용 조항 삭제 등으로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 미연 방지
- 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용어 변경 등 복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
- 다.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시행방법 개선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2. 주요내용

-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 준용조항 삭제
- 나. 연가 사용 장려를 위하여 연가제한 사유 삭제
- 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
- 라. 특별휴가 일수 확대, 휴가 사용방법 개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92] 또는 E-mail[hoho88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한 번만 분할”을 “세 번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p><u>변만 분할</u>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p> <p>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p> <p>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u>10일</u></p> <p>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p>	<p><u>변까지</u>-----</p> <p>-----</p> <p>-----</p> <p>-----</p> <p>1. -----</p> <p>-----</p> <p>2. -----</p> <p><u>20일</u></p> <p>3. -----</p>
---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0. 7. 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전문개정 2010. 7. 15.]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0. 25.>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9. 5. 13.]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및 여가 활성화
- 나. 당직근무 직원 처우 개선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능률 향상

2. 주요내용

- 가. 당직자 휴무 보장 단서조항 신설
 - 근무종료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숙직자의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 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포함)중 하루 휴무
- 나. 문장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92] 또는 E-mail[hoho88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하루를 지정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읍면,”을 “읍·면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8.12.31)

④ <삭제 2010.11.30>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7)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근무상황에 관한 현행의 전자적 관리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여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

2. 주요내용

-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순화
-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통합 제정에 따라 조문 및 내용 정비
- 다. 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92] 또는 E-mail[hoho88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거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근무기장의 확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장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단위”를 “담당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을 “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를 “경우에는 전년도와 해당 연도”로 “과전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을 “과전복귀나 전출된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5조(중전 제6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출장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조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과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붙여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나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은 일반문서·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p>	<p>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p> <p>③ ----- ----- 경우 ----- -----</p>
<p><u>제5조(휴가의 절차)</u>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u>제6조(출장의 절차)</u>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 할 수 있다.</p>	<p><u>제5조(출장의 절차)</u>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p> <p>② ----- ----- 출장기록 ----- -----</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u>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p>
<p><u>제7조(업무의 인계)</u>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p>	<p><u>제7조(업무의 인계)</u>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p>

<p>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p> <p><u>제8조(서류보관등)</u>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 하여야 한다.</p>	<p>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붙여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p> <p><u>제8조(서류보관 등)</u>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나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은 일반문서·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p>
--	---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앞쪽)

부서명 :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출장신청서

20

결 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						
여비				정산		

210mm×297mm[백상지(80g/㎡)]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17. 7. 26] [총리령 제1408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절 근무사항

제6조(근무기장의 확립)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장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9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8. 2. 2] [행정안전부령 제40호, 2018. 2. 2, 일부개정]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분(副本)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개인별 인사기록[「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유지·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3.]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13.]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계획조례」
2. 개정이유 : 완화법령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완화 과제정비
3. 주요내용
 -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춰 정비
 -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명칭 간소화
 - 생산녹지지역 행위 제한 완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허용

- 보전관리지역 행위 제한 완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허용
-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허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 건축허용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규정 구체화(자치법규 정비대상)
- 그 밖에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583, 팩스 : 055-940-3579, 이메일: tesla1004@korea.kr

붙임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경사도 산정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林相) 산정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③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의 제1항의 “별표 1의2”를 “별표1의2 제2호가목(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200미터”를 “100미터”로, 제3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안”을 “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36조를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각호 외의 부분)에 제3호까지 및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의 가목, 나목

제3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

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제4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도로”를 “도로”로, “미관”을 “경관”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을 “(시가지경

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미관“을 “경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같은 조 본문 “영 제77조11항“을 “영 제80조“로,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같은 조 본문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제1호 및 제2호, 제4호를 삭제한다.

제5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

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u>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 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u></p>	<p>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u>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u></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2. ~ 4. (생략)</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p> <p>1. <u>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신 설>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1.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 2.~3.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 (생략)
 -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④ (생략)

②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1. 경사도 산정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 2. 임상(林相) 산정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③ (현행 제②항과 같음)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

- 1.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 2.~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 3. <삭제>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15. (생략)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 1.~2. (생략)

- 3.~6. (생략)

<신 설>

- 7. (생략)

<신 설>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특화경관
지 구 안

-----.

- 1. ~ 15. (생략)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4.~5.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6.~9.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동호의 가목, 나목

-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특화경관지구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 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

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동호의 가목, 나목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 1. ~ 3. (생략)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군수가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 - - - - 시가지경관지구안

-----.

② -----도로

----- 경관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6. (생략)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7. (생략)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② 시가지경관지구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

1. ~ 16. (현행과 같음)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1. ~ 17.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생략)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1. (생략)
- ② ~ ③ (생략)

<신 설>

-----.

1. <삭제>
2. <삭제>
3. 방재지구
4.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 1.~21.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 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신 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3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신 설>

1. ~ 13. (생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생략)

<신 설>

2.~7. (생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신 설>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 14. (현행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1. ~ 10. (생략)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 8. (생략)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생략)

<신 설>

2.~8. (생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12. (생략)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11. (현행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 영 별표 1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 8. (현행과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3.~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 영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12. (현행과 같음)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

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11. (생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신 설>

1.~10. (생략)

<신 설>

련)

※ 영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
-----가목.
바목.-----

2.~11.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영 별표 1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①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10. (현행과 같음)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

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24]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

발전 용량 (킬로와트)	도로에서 직선거리 (미터)	주거 밀집 지역 또는 관광지에서 직선거리(미터)	비고
299.9이하	200	300	
300 ~ 599.9	200	400	
600 ~ 999.9	200	500	
1,000이상	200	600	

주1) 발전용량은 연접한 부지 30미터 이내, 동시다발적인 발전시설을 합산한 용량으로 한다.

[별표 24]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

발전 용량 (킬로와트)	도로에서 직선거리 (미터)	주거 밀집 지역 또는 관광지에서 직선거리(미터)	비고
200미만	100	200	
200 ~ 400미만	100	300	
400 ~ 600미만	100	400	
600 ~ 1,000미만	100	500	
1,000이상	100	600	

주1) 발전용량은 연접한 부지 30미터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 발전허가를 득하고 시행계획이거나, 개발행위준공 1년 이내 또는 시행중인 발전시설을 합산한 용량으로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

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

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7.1.]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12.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4.10.>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2016.12.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9.>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정부3.0 경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51호(2017.04.19.)와 관련 됩니다.

2.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795호, 2017.04.18.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불임의 국토교통부 공문 및 법률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시·군의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1. 국토교통부 개정사항 알림 공문 1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도시계획과장), 진주시장(도시계획과장), 통영시장(도시과장), 사천시장(도시과장), 김해시장(도시계획과장), 밀양시장(도시과장), 거제시장(도시계획과장), 양산시장(도시과장), 의령군수(건설도시과장), 함안군수(도시기반실장), 창녕군수(경제도시과장), 고성군수(환경개발과장),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하동군수(도시건축과장), 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 함양군수(도시환경과장),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합천군수(도시건축과장), 창원시장(공원개발과장), 창원시장(산림복지과장), 진주시장(공원관리과장), 통영시장(공원복지과장), 사천시장(녹지공원과장), 김해시장(공원관리과장), 밀양시장(산림복지과장), 거제시장(산림복지과장), 양산시장(공원과장), 의령군수(산림복지과장), 함안군수(산림복지과장), 창녕군수(주택산림과장), 고성군수(녹지공원과장), 남해군수(환경복지과장), 함양군수(산림복지과장)

주무관	이강용	도시계획담당	최동욱	도시계획과장	전결 2017. 4. 21. 박환기
협조자	주무관	이병화			
시행	도시계획과-6158	(2017. 4. 21.)		접수 도시건축과-18732	(2017. 4. 21.)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암대로 300, 경남도청 (사람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4226	팩스번호	055-211-2619	/ rt585@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우리집 소화가 1개,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사항 알림

1. 여건 변화, 토지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 정비하는 등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795호, 2017.04.18.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용도지구 통·폐합 도입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 등을 일선 담당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수차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조속히 검토한 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부는 금번 개정된 법률(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 등)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하게 시행령 등을 통하여 규정(필요시 설명회 등 개최)할 계획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의견 조회 시 적극 참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장), 부산광역시(도시계획과장), 대구광역시(도시계획과장), 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장), 대전광역시(도시계획과장),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장), 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장), 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 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 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시과장)

주무관 양승길 기술서기관 박용선 과장 전결 2017. 4. 19. 정의경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3851 (2017. 4. 19.) 접수 도시계획과-6004 (2017. 4. 19.)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711 팩스번호 044-201-5569 / devilpc@molit.go.kr / 대한민국 공개

개발·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바. 위탁사업자 등에 대한 감리 업무 규정(제12조의4제6항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제13조)
 1) 시장·군수·구청장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제13조의2제2항제2호)
 정비지원기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 업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선도사업계획의 수립 등(제13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절차 등은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 장

●법률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미관·경관·안전”을 “경관·안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을 “군관리계획은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제3항 단서 중 “있다”을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경관을 보호·형성하기”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최고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시설물”을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10호) 중 “주거기능”을 “주거 및 교육 환경”으로, “목적으로”를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5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관지구나 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미관지구나 고도시구의”를 “고도시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미관지구·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용도지구 개편내용(2018.4.19 시행)

현 행		개 정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폐지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항만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공용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학교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	복합용도지구	신설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69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 공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69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군 계획 시설	김천리 김천경로당주변 (소로2-6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김천	소로	2	69	206.4	8	2,639	거창읍 김천리 224-1 ~ 거창읍 김천리 469-1		2018.09. ~ 2019.08.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3), FAX(055-940-3579), E-mail : purity0006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54,416	2,639					
1	거창읍 김천리	224-1	도	101	22		거창군			
2	"	225-3	답	101	27		거창군			
3	"	225-4	답	66	66		정*연			
4	"	471-1	답	50	14		국(기획재정부)			
5	"	471-2	도	188	12		국(기획재정부)			
6	"	219-9	전	24	24		거창군			
7	"	219-8	대	1	1		거창군			
8	"	219-10	답	398	398		거창군			
9	"	218-20	답	41	41		거창군			
10	"	472-45	전	1,207	235		국(기획재정부)			
11	"	472-132	천	931	25		국(국토교통부)			
12	"	472-131	전	39	40		국(기획재정부)			
13	거창읍 장팔리	1459-1	천	45,859	293		국(건설부)			
14	"	1-1	천	1,098	184		거창군			
15	"	1-4	과	84	74		거창군			
16	"	1-2	과	151	29		거창군			
17	"	1-3	과	1,979	421		거창군			
18	거창읍 김천리	470-1	도	374	47		국(국토교통부)			
19	"	210-30	대	7	7		거창군			
20	"	210-29	대	80	80		거창군			
21	"	210-6	전	1,098	215		거창군외3인			
22	거창읍 김천리	210-27	대	82	82		거창군			
23	"	217-6	대	15	15		거창군			
24	"	217-7	답	261	261		거창군			
25	"	453-19	구	165	20		국(농수산부)			
26	"	469-1	도	16	6		국(국토교통부)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신청 공고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가구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0일

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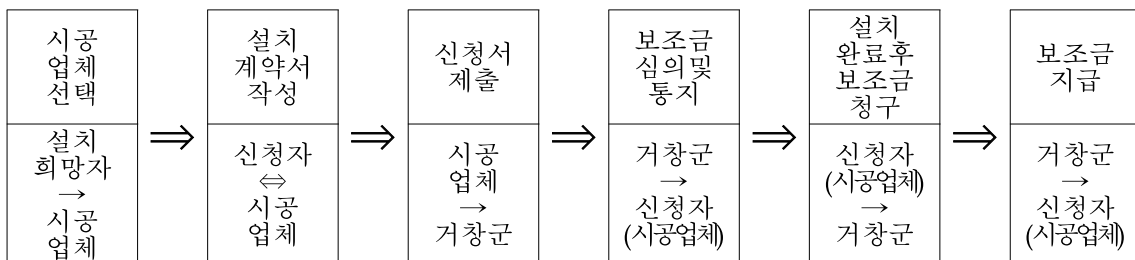
1. 설치 희망가구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8. 8. 27. ~ 2018. 9. 14. (3주간)
 -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또는 신청자가 적을시 연장될 수 있음
- 지원가구 : 50가구 정도
- 사 업 비 : 34,500천원
- 지원대상 : 거창군 지역 공동주택 거주자 중 2018년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발전설비를 설치한자
- 설치금액 : 1가구당 900천원(지원 690 / 자부담 210)
- 지원금액 : 1W당 2,300원 【보조 690천원】
- 보급품목 : 가구별 미니 태양광(300W이하)설비 1세트
 -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전력량 측정기, 모듈 난간 거치대 등
 - 설치비는 참여업체 제시가격 적용

2. 지원신청 및 방법

- 신청자격 : 거창지역 공동주택 거주자 (남향 베란다 필수, 세입자 가능)
 - 건물소유자 또는 세입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우리군에서 선정된 참여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한 경우만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자가 시공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함.
 - 신청자는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을 미리 검토하여 설치 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배치가 남향으로 수목 등에 의한 음영이 없어야 함
- 대상자 선정 :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사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1순위 : 경제교통과-98973(2017.11.23)호 '18년 미니 태양광 수요조사 제출자
 - 2순위 : 동일 공동주택내 다수 신청자(5가구 이상 해당)
 - 3순위 : '17년(1년분)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
- 보조금 지급 : 설치확인 완료 후 설치(참여업체)가구에 직접 지급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3층)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1호 및 2호 서식)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기타사항
 - ▶ 적합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 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우선순위 부여
 -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나, 접수순서는 담당부서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함

○ 사업진행 순서



○ 2018년 참여업체 및 지원제품 현황

참 여 업 체 명		(주)해인기술	비고
대표전화 (FAX)		070-4870-5980 (055-221-5418)	
모 들	제조사	(주)LG전자	
	용 량	300W	
	규격(mm)	1686×1016×40	
인 버 터	제조사	한솔테크닉스(주)	
A/S 기간		하자보수 기간 : 5년	
설치장소		아파트 난간 바깥쪽 거치	
설치가격		90만원(지원69 / 자21)	

3. 주의사항

- 설치되는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는 신청자 개인의 재산으로 업체 선택, 시공과정, 사후관리 등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수령 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구는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시공업체가 수령함.
- 보조금 지원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 사용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미니 태양광은 5년 이내에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거창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기, 이전 비용은 설치자 부담
- 거창군의 사정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보조금 지급방법이 변경 될 수 있음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 (☎055-940-37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급 제품 관련 상세 문의사항은 업체로 문의 요망

5. 참고사항

- 17년 거창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제품현황 설치 전경(거창읍 U빌리지1차)



- 붙임
1.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2. 표준 설치 계약서(제2호 서식)
 3. 설치참여 및 완료확인서(제3호 서식)
 4. 보조금 신청서(제4호 서식)
 5. 보조금 위임장(제5호 서식)
 6. 준공사진 양식(제6호 서식)
 7. 개인정보 동의서(제7호 서식)
 8. 청렴서약서(제8호 서식)

【제1호 서식】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	전화 :	055-	
주택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월전력사용량				
설치장소 현황	층수 및 면적	층, 평 또는 m ²		
	베란다 방향	<input type="checkbox"/> 동 <input type="checkbox"/> 서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북		
	음영여부	건물(유, 무) 조정수(유, 무) 기타()		
	안전상태	베란다 난간대의 벽체부착 견고성(여, 부)		
	소유여부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임대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수		
설치기간	2018. . . ~ 2018. . .			
시공업체		용량	W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국(도)비보조	거창군보조	자부담
위와 같이 미니태양광 설치를 통해 가정 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참여하고자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서(계약서) 사본 1부(제2호서식) - 개인정보 동의서 1부(제7호서식) ※ 시공업체 현장방문 및 컨설팅 후 작성 제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호 서식]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월일	※시공업체는 사실관계(신분증 등) 확인을 하여야 함				
		주 소					
		전 화			핸드폰		
	시공 업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핸드폰		
계 약 내 용	분 야	미니태양광	설비타입	베란다형	설치용량	W	
	사 업 명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총사업비	금	원	
	설치장소주소			보조금	국(도)비	금	원
					군비	금	원
	설치기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자 부담금	금	원	
계약금액	금 원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의 원칙) (신청인)과 (시공업체)는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부담비용) ①(신청인)은 (시공업체)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체)는 (신청인)에게 거창군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 하며, (신청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인)과 (시공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시공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시공업체)는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신청인)은 거창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의 하자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 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 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거창군의 사업 승인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8년 월 일 [신청자명] [인] [시공업체] [인]							

【제5호서식】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완료 사진

구 분	설 치 전	설 치 후
설 치 전 설 치 후		

【제6호서식】

보조금 지급 위임장			
위 임 인 (신 청 자)			
주 소			
연 락 처			
거창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아래 시공 업체에게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위임금액	금 원		
대 리 인 (시공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	
20187년 월 일 위임인(신청자) (인)			
거 창 군 수 귀하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청 럽 서 약 서

2018년 거창군 베란다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청럼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 것이며,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럼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

서약자 주소 :

성명 : (인)

- 거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거창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예정인 「거창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과업수행 적격업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8. 8. 22.(수) ~ 2018. 9. 5.(수) <15일간>

2. 모집인원 : 28명(평가위원의 4배수)

-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후 참여업체 추천에 의하여 최종 7명 위촉

3. 모집분야 : 건축, 도시계획, 조경, 환경, 교통 등

구 분	소 계	도시계획·교통	건축·조경·환경	문화·예술·관광	경제·산업	지역개발
평가위원	7명	2명	2명	1명	1명	1명
평가위원 예비인원	28명	8명 이상	8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4. 역 할 : 입찰 제안공모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5. 자격 조건 및 제외 대상

가. 자격요건(해당 심사분야 전문성 있는 자)

- 1) 공무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2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2) 대학 : 전임강사(조교수) 이상인 해당 분야 전공자
- 3)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 4) 기타 : 5년 이상 모집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자,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제외대상

-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8. 22.(수) ~ 2018. 9. 5.(수) <15일간>

나. 접 수 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본관 1층 ☎055-940-3562)

다. 접수방법 : 기한내 이메일(rkddls9@korea.kr), 방문접수, 우편으로 수시 접수

※ 모집분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이메일 및 팩스 접수 시 전화 확인

라. 제출서류

- 1)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서식1)
- 2) 평가위원 후보자 보안각서 1부(서식2)
- 3) 재직증명서(교수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1부
- 4) 공인된 자격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등) 1부

7. 평가 위원 선정

가. 일 시 : 2018. 9. 10.(월) 18:00 ※ 제안서 접수 예정일

나. 선정인원 : 7명

다. 선정방법 : 입찰 참여업체가 예비명부(28명)상의 고유번호를 7번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선정(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 고령자순)

라.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
(연락불능, 불참 시 차순위 섭외)

8. 제안서 평가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18. 9. 13.(목) 14:00 ~ (※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장 소 : 거창군청 중회의실(거창읍 중앙로 103)

9. 과업개요

가. 과업명 : 거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비 : 120백만원

다. 대상지 : 거창군 거창읍 도시지역

라. 과업내용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10. 기타 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내신 서류는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라.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 (☎055-940-3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2일

거창군수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문분야	
2.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3. 직장/소속	직장(단체)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4. 학력 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5. 경력 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6.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7. 저서 및 논문					
8.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평가위원 후보자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동의 및 보안서약서

본인은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과 관련한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후보자)으로 선정됨에 동의하며,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서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본인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된 사실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상기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계획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게 평가하고 금번 사업계획평가와 관련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0. .

평가위원 후보자 소속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거창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거창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신청서 기재사항
 - ▶ 등록신청서 상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 등)
- <선택정보> 없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위와 같은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